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77
----------	-------

발의연월일 : 2026. 8. 25.

발 의 자 : 양부남 · 이해식 · 허성무
김문수 · 박균택 · 윤준병
정진욱 · 서삼석 · 이광희
임문영 · 이훈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5극 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초광역권은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와 같이 단일 광역자치단체는 초광역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한편, 지역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다른 기금으로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재원 조정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초광역권의 정의에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항목 중 전입금의

범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금으로도 확대하여 기금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세입과 세출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78조, 제79조, 제81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광역시의 군을”을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통합특별시, 광역시의 군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성장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를 “성장을 위하여 연계·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한 권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역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

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

다.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특별시 또는 특

별자치도가 독자적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하여 설정한 권역

제7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제2조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 광역시”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 광역시”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단일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적”을 “초광역권”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6호 중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로 한다.

제79조제1항제5호 중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중 “특별회계로부터의”를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중 “특별회계로부터의”를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제1호 중 “특별회계로부터의”를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 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4. ----- ----- ----- ----- ----- <u>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u>)· <u>군(통합특별시, 광역시의 군을 -----</u> -----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하	6. ----- ----- ----- ----- <u>특별시·통합</u> <u>특별시</u> -----

“시·도”라 한다)의 산업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7.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성장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7. -----
-----성장을 위하여
연계·협력사업 추진이 필요
한 권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역을
말한다.

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
구역을 넘어서는 권역

나. 「지방자치법」 제199조
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
·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는 권역

다. 「지방자치법」 제2조제1
항제1호에 따른 통합특별
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독
자적 발전 전략 수립을 위
하여 설정한 권역

8. ~ 18. (생략)

제7조(시·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 ⑤ (생략)

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8. ~ 18. (현행과 같음)

제7조(시·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도의 지역 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

통합특별시, 광역시-----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① 혁신
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
정한다.

② ~ ④ (생략)

제30조(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
일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
서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
· 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협력 사업(이하
“초광역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
계로부터의 전입금

7. ~ 12. (생략)

②·③ (생략)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① 혁신
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통합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
치도별로 지정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① -----
초광역권-----

-----.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

7.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u>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u> 6. ~ 11. (생략) ② ~ ④ (생략)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u>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u> 2. ~ 5. (생략) ②·③ (생략)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u>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u> 2. ~ 5. (생략) ②·③ (생략) 제81조의2(초광역특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4. (현행과 같음) 5. <u>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u> 6.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 1. ----- <u>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u>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 1. ----- <u>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u>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의2(초광역특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
--	---

1. 일반회계나 다른 <u>특별회계</u>로 <u>부터의</u> 전입금 2. ~ 5. (생략) ② (생략)	1. ----- <u>특별회계</u> <u>또는 기금으로부터의</u> ----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